

2019년도 제1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9. 2.(월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6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19건(안전번호 제2019-104784호~105660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6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9쪽의 밴드명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전차 회의록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밴드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밴드명을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04784호~105660호로 총 2,019건임
안건번호 제2019-104784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시판중인 소설 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6개의 복제물(txt.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블로그를 보여주면서)해당 블로그에는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게시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안건번호 제2019-104785호는 권리자로 보이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시판중인 소설 1화~415화(완결) 복제물(txt.파일)을 판매한 사안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19-104784호, 104785호 어문저작물을 제공하는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제2019-104784호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6개의 텍스트 파일의 소설은 제목이 생소해 보이는데, 실제 소설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대답함
- C 위원 : 제2019-104784호 복제물은 직접 타이핑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와, 분량에 대하여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텍스트 파일을 보여주면서)직접 타이핑하여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하단 “- The end-” 문구가 있으므로 소설 전체 분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지난 제1분과위원회(2019. 8. 29. 개최, 제2019-171회) 심의안건 중 합법 저작물의 소설 내용 중 ‘대여섯 살’을 텍스트 파일 복제물에서 ‘5~6살’로 바꾸는 등 표현 일부를 변경한 사례가 있었음

번역물이 아닌 우리나라 저작물이었는데, 텍스트 파일을 제작한 사람이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는 심의위원 의견이 있었음

- B 위원 : 제2019-104785호는 민원인이 권리자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은 해당 출판사의 직원으로 보이는데, 심의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신고 내용을 보면 “자사의 저작물” 이라고 되어있음

- B 위원 : 답변이 되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판 중인 어문저작물의 복제물을 무단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이견 없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제2019-104784호, 104785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04786호~제2019-104896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에 최신 가요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동영상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해당 영상들은 음원과 함께 음원을 실연한 가수 사진 또는 가사, 드라마 스틸 컷 등을 무단 이용하고 있음
또한 '가사' 한 곡 전체 분량도 함께 제공되고 있는데, 노래가사의 경우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
특히 제2019-104786호~104796호는 네이버 이용자 1인이 2019. 7. 13. ~ 2019. 9. 1.(10부작) tvN채널에서 방영한 '호텔델루나' OST 관련 11개 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104786호~제2019-104896호 음악저작물 등을 무단 이용한 영상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다수의 음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이나 인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2019-104786호~제2019-104896호는 게시자가 한 곡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다수의 음악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05648호~105660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어떤 온라인 게시물이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cracking)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한 경우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그런데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크래킹(cracking)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키(license key)를 제공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한편 Windows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홈페이지에서 추후 라이선스 인증을 요구하는 'Windows 10'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Windows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dead copy)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보호원이 제출한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다운로드 화면, 실행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05648호의 'Windows7' 복제물의 실행화면은 Windows 7 설치화면의 첫 화면인데, 보호원에서 온라인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팀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다운로드 용량과 시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설치화면의 첫 화면을 실행화면으로 채증하고 있다고 함

아울러 보호원에는 현재 소프트웨어 감정 기능이 없어 프로그램 복제물의 경우 원 저작물 복제 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제2019-105660호의 'Windows 8.1' 복제물의 제공화면을 보면 "설치시 자동인증 됩니다. 이지크립트 비밀번호:1234"로 되어 있는바 크래킹(cracking) 프로그램 즉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정보 또는 무력화한 결과로서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105648호~105660호 웹하드 사이트의 'Windows' 프로그램 복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제2019-105660호의 경우 게시자가 제공하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실제 복제물을 실행을 하였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은 복제물 실행 전 'Windows 8 설치 프로그램' 첫 화면까지 채증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A 위원 : 제2019-105660호 실행화면을 보면 "Windows 8 시험판"으로 되어 있는데, 제공하고 있는 복제물이 트라이얼 버전(trial version)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건은 트라이얼 버전(trial version)으로 소프트

웨어 개발 업체가 사용자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기전에 해당 프로그램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보이나, 제공화면에는 “설치시 자동인증 됩니다.” 라고 되어있음

그렇다면 크랙(crack)한 프로그램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한편 지난 전체위원회(2019. 8. 27. 개최, 제2019-167회)에서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 10’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에서 크랙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키 없이 컴퓨터프로그램만 제공한 사안에서 시정권고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에서 라이선스 약관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특성상 권리자는 무단 복제물의 경우에도 라이선스 인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보호원의 시정권고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시정권고 심의에서 권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고려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해당 안전을 가결한 바 있음

본 건은 지난 전체위원회 개최 이전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안전인데, 지난 전체위원회 이후 온라인모니터링 담당 팀장에게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 모니터링 시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달라고 안내하였음

- B 위원 :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5648호~105660호는 복제·전송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4897호~105647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어문, 게임, 영상물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영화 '레드슈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4937호는 밴드에 게시된 것이고, 2019. 7. 25. 개봉한 국내 최신 영화임
(출판 '메디컬 환생'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5013호는 밴드에 게시된 것이고, 출판사 뉴에피소드에서 출판한 어문 저작물임
(해당 밴드를 제시하면서)밴드 명을 보면 불법복제물을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임
(출판 '등신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5051호는 다음카페에 게시된 것이고,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현대문학에서 출판하여 판매 중인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영화 '원더랜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5082호는 웹하드에 게시된 것이고, 2019. 8. 14. 개봉한 최신 영화임
(영화 '기생충'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5101호는 웹하드에 게시된 것이고, 현재 상영 중인 영화로 1,000만 관객 관람한 국내 영화임
(출판 '그 아이의, 포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5618호는 웹하드에 게시된 것이고, 출판사 학산문화사가 2019년 출판한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하며, 해당 게시물은 데드카피이므로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4897호~10564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4784호~105660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1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9.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